

【창원시 고시 제2020-307호】

창원도시관리계획(녹지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창원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(녹지) 결정(변경) 사항과, 같은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작성된 지형도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하오니,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은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2020. 11. 13.

창 원 시 장

1.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1) 녹지 결정 조서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종류	위치	면 적(㎡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변경	54	완충녹지	완충녹지	의창구 동읍 월잠리 58-12	616	감30.7	585.3	경상남도고시 제2004-352호 (2004.12.02)	

2)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표시 번호	시설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54	완충녹지	◦면적변경 기정 616㎡ → 변경 585.3㎡ (감30.7㎡)	◦2018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로 인한 맹지발생 사유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변경

2. 관련도면 : 실음생략(창원시 도시계획과 비치)

※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(<http://luris.molit.go.kr>) 열람 가능함.

3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도시계획과(☎055-225-4125) 및 공원녹지과(☎055-225-7093)로 문의 바랍니다.